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903
----------	-------

발의연월일 : 2025. 6. 17.

발 의 자 : 김기현 · 이종배 · 김정재
김장겸 · 김미애 · 박성민
김위상 · 박덕흠 · 조정훈
김선교 · 임이자 · 성일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성형 인공지능의 학습용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등 창작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 규정은 미비한 상황임.

특히 저작물의 권리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자신이 제작한 콘텐츠가 학습용데이터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부터 저작물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학습에 이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1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예외 등에”를 “예외, 제4항에
따른 확인 절차 등에”로 한다.

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 무)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사전 고지, 제2항에 따른 표시, 제3 항에 따른 고지 또는 표시의 방법 및 그 <u>예외 등에</u>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20676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 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인공지능사업자는 「저작권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저작 물등의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 물등이 학습용데이터로 이용되 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u> ⑤ ----- ----- ----- -----<u>예외, 제4항에 따른</u> <u>확인 절차 등에</u>----- -----.